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호정 의원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
최호정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최근 청년안심주택에서 임대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하여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임차인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안심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 긴급임시주거 지원 및 이주비, 미반환 임대보증금에 대한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안심주택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제안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